



제1625호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4 5 4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도 시 경 관 과 2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제 1 4 5 5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관 광 과 16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1 4 6 1 호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미 디 어 정 보 과 26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1 4 7 6 호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 획 예 산 과 37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1 4 8 2 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채움어울림플랫폼)사업 도 시 재 생 과 47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열람
- 공 고 제 1 4 8 3 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체 육 진 흥 과 50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1 4 8 7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기 획 예 산 과 55
의견수렴
- 공 고 제 1 4 8 8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 획 예 산 과 68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1 4 8 9 호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 획 예 산 과 116
및 의견수렴
- 보 건 소 공 고 제 6 7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 품 위 생 과 135
예정 공고

고 시

- 고 시 제 1 2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136
- 고 시 제 1 2 3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소2-360호선, 소 도 시 재 생 과 139
2-361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 시 제 1 2 4 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고시 기 획 예 산 과 141
- 고 시 제 1 2 5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소2-362호선)] 결 도 시 재 생 과 153
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 시 제 1 2 6 호 도시관리계획(간석자유시장주변 지구단위계획)결정(변 도 시 재 생 과 155
경) 및 지형도면 고시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454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월 15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와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관리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및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에 따른 과태료 조항 신설(제33조 별표10)

- 현재 별개로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운영 사무를 구분하여 공공게시 시설 관리 사무 정비(제21조)
- 행정대집행의 위탁 규정 삭제(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8. 4.(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 도시경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낼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 연 락 처 : ☎ 453-2282, FAX 453-28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 이유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와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관리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 및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에 따른 과태료 조항 신설(제33조 별표10)
- 1) ○ 현재 별개로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운영 사무를 구분하여 공공게시시설 관리 사무 정비(제21조)
- 행정대집행의 위탁 규정 삭제(제28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참고자료: “별첨”

남동구조례 제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정계시대”를 “지정계시대와 현수막 지정계시대 상단간판”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 2항제3 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 을 제작·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13만원	
- 0.5㎡ 이하		22만원	
- 0.5㎡ 초과 0.8㎡ 이하		32만원	
- 0.8㎡ 초과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42만원	
- 1.0㎡ 이상 1.3㎡ 이하		50만원	
- 1.3㎡ 초과 1.6㎡ 이하		64만원	
- 1.6㎡ 초과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75만원	
- 2.0㎡ 이상 2.3㎡ 이하		100만원	
- 2.3㎡ 초과 2.6㎡ 이하		129만원	
- 2.6㎡ 초과 3.0㎡ 미만		130만원+연면적 3㎡	
라) 연면적 3㎡ 이상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5㎡ 초과 0.8㎡ 이하		12만원	
- 0.8㎡ 초과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0㎡ 미만		33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49만원	
- 2.0㎡ 이상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0㎡ 미만		58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7㎡ 초과 4.4㎡ 이하 - 4.4㎡ 초과 5.0㎡ 미만		22만원	
		25만원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미만		42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		해당 과태료의 2배	
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우		장당 25천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33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50천원	
- 21장 이상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3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91일째부터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 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3.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특구에서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8조(특구에서의 특례) ①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필요한 <u>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u> 할 수 있다.	제13조(정비 등 지원) ① ----- ----- ----- ----- <u>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 할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	③ ----- ----- ----- ----- ----- -----

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
탁)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9조
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
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민게시판과 전자게시대(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
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
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또는 남동
구 도시관리공단에 공공게시시
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제28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
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
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에 대
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
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
여 해당 광고물 등의 관리자 등
에게 징수할 수 있다.

-----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
탁) ① -----

----- 지정게시대와 현수
막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공공게시시설 위탁 업무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수반 사항 없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455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안」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규정을 이용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람료 징수 등 개정 : 안 제15조 개정
-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규정 개정 : 별표1 제2호 가목 비고9
-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 안 제2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이

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33 FAX
453-21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퍼센트를”을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관람자로부터”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를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무료”를 “할인 또는 무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제9조 관련)

1. 사용시간

구 분	시간(공연장)	비 고
오 전	09:00 ~ 12:00	※ 철야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한함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철 야	22:00 ~ 다음날 07:00	
전시실	09:00 ~ 22:00	

2.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공연	대중음악/행사	비 고
대공연장 -627㎡ -703석	오전	100,000	150,000	무대 403㎡ (21m*14m)
	오후	140,000	190,000	
	야간	200,000	250,000	
소공연장 -277㎡ -196석	오전	30,000	50,000	소강당 서랍식객석
	오후	50,000	70,000	
	야간	70,000	100,000	
전시실(525㎡)	1일	㎡당 200	※ 무빙월 120m / 벽체 90m	

※ 비고

- 1) 공연대관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2) 공연대관의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다만, 1회 사용시간 동안 2회 이상의 공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3)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4)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공연대관료의 20%를 가산한다.
- 5)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은 매 3시간 단위로 야간사용료의 100%를 적용한다. 다만,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6) 공연은 공연 자체가 목적인 국악·풍물, 순수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을 말한다. 다만, 관람 대상이 한정되는 특정 단체의 공연이나 상업적 의도가 명확할 경우에는 행사 대관료를 적용한다.
- 7)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 기본시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냉방비 및 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비(전기료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사용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규모(㎡)	사용료	비 고
연습실1	93.0	50,000	○ 1회 기준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연습실2	62.8	30,000	
연습실3	50.4	30,000	
연습실4	16.0	20,000	
스튜디오(대)	57.7	30,000	
스튜디오(소)	29.6	20,000	
문화교실1, 2	72.3	40,000	
문화교실3	91.5	50,000	
회의실	108.9	50,000	
공연장로비	400.0	50,000	
야외공연장	50.0	30,000	
분장실1(주연)	18.2	10,000	
분장실2(여)	38.8	20,000	
분장실3(남)	32.8	20,000	

다.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녹 음	방송, CF, 영화촬영	비 고
대공연장	150,000	1,000,000	방송, CF, 영화촬영 : 8시간 기준 녹음 : 1회 4시간기준

※ 녹음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하고, 철야작업시는 사용료의 150%로 하며, 녹음의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50%로 한다.

라.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기 본 사용료	비 고
시설명					
피아노	대공연장	고급	1일	6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회관이 지정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덧마루 설치, 전환, 해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댄싱플로어 접착테이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 밖의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빔프로젝터 사용시 노트북은 사용자가 지참한다 ○ 모든 부대설비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한다.
무대	댄싱플로어(무용매트)		1일	100,000	
	사 막		1일	100,000	
	덧 마 루	기본50㎡	1일	50,000	
		추가	1㎡	2,000	
	음 향 반 사 판		1일	50,000	
음향	음향콘솔 CD Player 포함	대공연장	1일	70,000	
		소공연장	1일	50,000	
	메인스피커(1식) 앰프 포함	대공연장	1일	70,000	
		소공연장	1일	50,000	
	모니터스피커(개별) 앰프 포함	대공연장	1일	20,000	
		소공연장	1일	20,000	
	유선마이크(다이내믹) 스탠드 포함	대공연장	1일	2,000	
		소공연장	1일	2,000	
	유선마이크(콘덴서) 스탠드 포함	대공연장	1일	10,000	
		소공연장	1일	10,000	
	무선마이크 배터리, 스탠드포함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20,000	
조명	기 본	대공연장	1회	50,000	
		소공연장	1회	30,000	
	Follow spot		1회	30,000	
	Moving Light		1일/1대	30,000	
	Elipsoid Light		1일/1대	2,000	
	Strobe Light		1일/1대	3,000	
	Par 64		1일/1대	1,000	
	Par46(1세트 8대)		1일/1조	3,000	
	Bank(1세트 4구)		1일/1조	3,000	
	드라이아이스 기계		1일/1대	10,000	
	포그 기계(포그 기계액 포함)		1일/1대	30,000	
기타	의상 및 대·소도구		1일	취득가액의 5%	○ 단위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함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② (생략)	제9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u>50퍼센트</u> 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 ---- <u>100분의 50</u> 을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무료</u> 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관람자로부터 ----- ----- <u>등에 대한</u> -- -- . ----- ----- <u>할인</u> <u>또는 무료</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공연기획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의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1. <u>회원 또는 단체 관람자</u>	
2. <u>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는 자</u>	
3.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u>	

고 인정하는 자

⑤ 제4항 각 호의 할인율이 두
가지 이상 적용이 가능한 관람
자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큰 하
나만을 적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461호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20.12.10. 시행)되어 관련 용어 및 조례 운영상 개선사항 보완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 최신 정보기술·서비스를 정보화 정책에 적용하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부 개정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안 제명)
- 상위 법률 개정사항 반영, 행정정보의 제공 등 실효성이 없어진 조문 삭제 및 조문의 위치를 변경(현행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안 제8조)
-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해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8. 5.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 미디어정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낼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미디어정보과

○ 연 락 처 : ☎ 453-2122, FAX 453-624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전부개정 조례안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지능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화 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 해소
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당해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담당업무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스마트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 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모든 구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발췌

□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전>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

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전부개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476호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 후 30여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온 구의 발전상을 담고 도시의 다양함을 표현하며 구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동구 BI(도시브랜드) 변경 : 남동구의 발전상과 다양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BI로 변경 (별표 2 개정)
- 남동구 캐릭터 변경(개발) : 구민에게 친근하고 활용성이 높은 캐릭터로 변경
(안 제3조제3호, 안 제9조제2항, 별표 3 개정)
- 구 동물 변경 : 자연친화적인 녹색·환경도시의 상징인 동물로 변경
돌고래→양 (안 제3조 제9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상표법」제2조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개청 후 30여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온 구의 발전상을 담고 도시의 다양함을 표현하며 구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BI(도시브랜드) 변경 : 남동구의 발전상과 다양한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BI로 변경 (별표 2 개정)
- 남동구 캐릭터 변경(개발) : 구민에게 친근하고 활용성이 높은 캐릭터로 변경
(안 제3조제3호, 안 제9조제2항, 별표 3 개정)
- 구 동물 변경 : 자연친화적인 녹색·환경도시의 상징인 동물로 변경
돌고래→양 (안 제3조 제9호 개정)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상표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소래포구축제”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돌고래”를 “양”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래포구축제”를 “남동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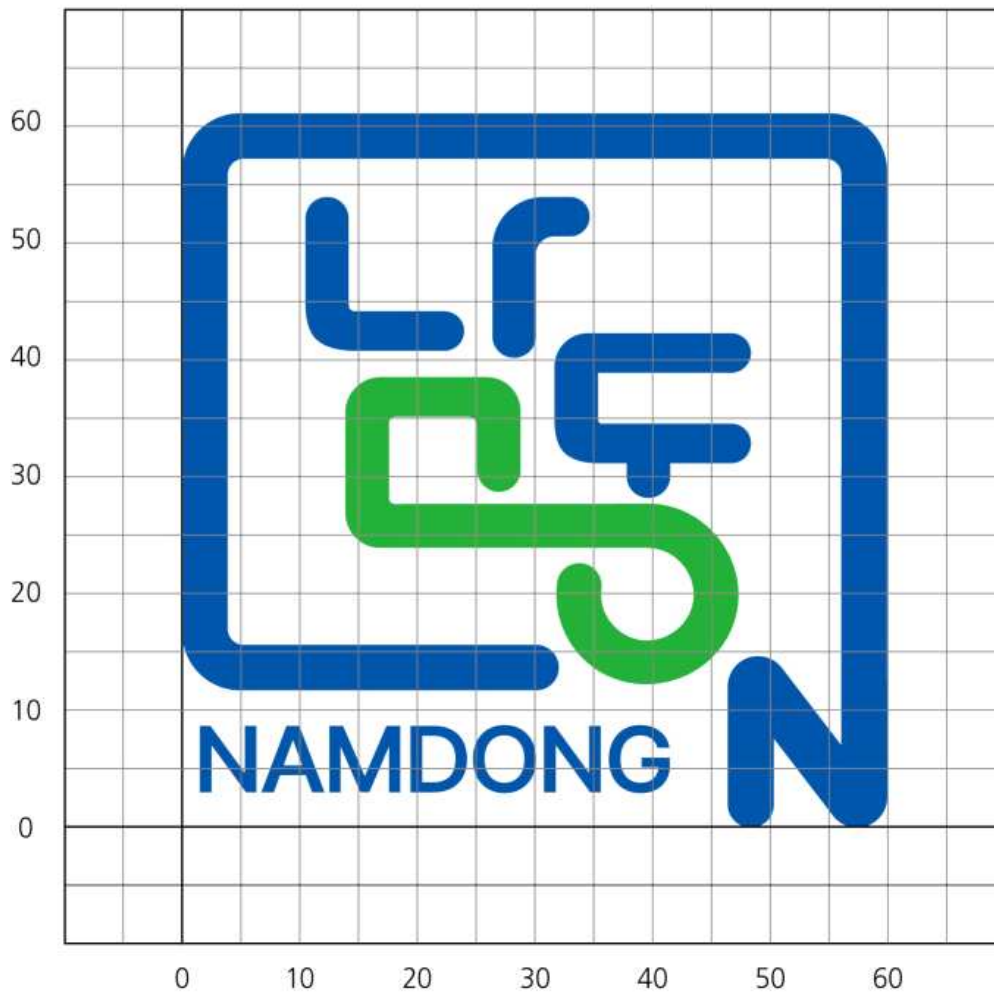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시브랜드 (제3조제2호 관련)



**NAMDONG
BLUE**

PANTONE 2935 C
C100 M65 Y0 K0
0054a1



**NAMDONG
GREEN**

PANTONE 361 C
C75 M0 Y100 K0
53a849

[별표 3] 남동구 캐릭터 (새랑이 게랑이) (제3조제3호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u>소래포구축제</u> 캐릭터 : 별표 3 4. ~ 8. (생략) 9. 동물 : <u>돌고래</u>	제3조(상징물의 종류) ----- ----- 1. ~ 2. (현행과 같음) 3. <u>남동구</u> ----- 4. ~ 8. (현행과 같음) 9. ---- 양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심벌마크 및 남동구 도시브랜 드, <u>소래포구축제</u>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남동구</u> -----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참고자료]

□ 상 표 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포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482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채움어울림플랫폼)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채움어울림플랫폼)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807,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40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명칭: 남촌동 채움어울림플랫폼 조성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 대지면적: 483㎡

○ 연 면 적: 1,149.0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도시재생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1.07.01. ~ 2023.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 조서(변경 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이름	주소	
계				483	483			
1	남촌동	340	전	274	274	권강녀	-	미등기
2	남촌동	341-2	대	209	209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지장물 조서(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m)	면적(㎡)	소 유 자		비고
						이름	주소	
1	남촌동	.340	비닐하우스	14.5*5.3*3	76.85	-	-	추가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453-2803, 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483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 및 구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창단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운영여건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273, FAX 453-21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 제41조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7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 및 구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창단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53만 남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화합 및 구민 자긍심 고취에 크게 이바지 하고있는 남동구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여건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조항 삭제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조례 제 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640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 제1640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조례 제1640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삭 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487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 직렬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일부개정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현황

구분	계	구분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행	1,284	763	23	128	13	357
개정	1,292	770	23	133	13	353
증감	+8	+7	-	+5	-	△4

- 직급별 조정현황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직	
현행	1,284	1	1,279	9	69	318	460	345	77	1	4
개정	1,292	1	1,287	9	69	320	463	347	78	1	4
증감	+8	-	+8	-	-	+2	+3	+2	+1	-	-

-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직렬 조정

단수직렬 (감)	복수직렬 (증)
----------	----------

△ 28

+ 28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
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7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 직렬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일부개정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현황

구분	계	구분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행	1,284	763	23	128	13	357
개정	1,292	770	23	133	13	353
증감	+8	+7	-	+5	-	△4

- 직급별 조정현황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직	
현행	1,284	1	1,279	9	69	318	460	345	77	1	4
개정	1,292	1	1,287	9	69	320	463	347	78	1	4
증감	+8	-	+8	-	-	+2	+3	+2	+1	-	-

-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직렬 조정

단수직렬 (감)	복수직렬 (증)
△ 28	+ 28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통합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본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원 중 2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를 “정원의 일부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공무원의 <u>정원 중 2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u>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 ----- ----- <u>정원의</u> <u>일부를</u> ----- ----- ----- <u>운</u> <u>영할 수 있다.</u>

【별표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92	770	23	133	13	353(10)
정무직 계	1	1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87	765	23	133	13	353
2급 소계	1	1				
지방이사관	1	1				
4급 소계	8	6	1	1		
지방서기관	6	5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69	37	2	9	1	20
행정	29	16	2			11
의무	4			4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9	6				3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0	6			1	3
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	1			1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급별						
6급 소계	320	197	8	24	3	88
행정	117	61	5	1		50(10)
세무	14	14				
사회복지	15	5				10
숙 기	1		1			
공업	2	2				
녹지	3	3				
보건	2			2		
환경	5	5				
시설	21	21				
전산	1	1				
방송통신	1	1				
운전	4	3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행정·세무	14	11			1	2
행정·사회복지	42	17	1			24
행정·사서	2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6	5			1	
행정·녹지	3	3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9	19				
행정·전산	2	2				
행정·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직급별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3	3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간호	5			5		
의료기술·간호	3			3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숙기·사무운영	1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5			3		2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7급 소계	463	285	10	48	5	115
행 정	153	87	5		1	60
세 무	27	27				
사회복지	69	23				46
숙 기	2		2			
공 업	7	6	1			
농 업	4	4				
녹 지	8	8				
수 의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7			7		
의료기술	1			1		
간 호	14			14		
간호조무	1			1		
환 경	12	12				
시 설	39	39				
전산	8	8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방송통신	4	4				
운 전	12	5	1		1	5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세무	14	13			1	
행정·사회복지	5	3				2
행정·사서	8	8				
행정·공업	3	3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18	18				
행정·전산	2	2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5	3			2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4			4		
보건·간호	15			15		
의료기술·간호	5			5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8급 소계	347	193	2	47	4	101
행 정	118	74	2			42
세 무	6	5			1	
사회복지	80	30				50
사 서	3	3				
공 업	8	8				
농 업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녹 지	5	4			1	
보 건	14	1		13		
의료기술	4			4		
간 호	25			25		
환 경	4	3			1	

해양수산	1	1				
시 설	22	22				
전 산	3	3				
방송통신	3	3				
운 전	5			1		4
사무운영	3	1				2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5	2				3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5	15				
행정·전산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9급 소계	78	45		4		29
행 정	29	14				15
세 무	4	4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사회복지	12	1		1		10
사 서	5	5				
공 업	2	2				
녹 지	1	1				
보 건	2			2		
의료기술	1			1		
시 설	10	10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5	1				4
행정·사서	2	2				
행정·녹지	1	1				
행정·방재안전	2	2				
연구직 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계	4	4				
5급(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 복지담당 행정직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488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신설사무 및 조정사무의 정비를 통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안정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 본청 및 동 사무분장 신설 및 조정 [별표1, 별표5]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신설	폐지	변경	관련 부서 및 기관
43건	31건	4건	8건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미디어정보과, 총무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보건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7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신설사무 및 조정사무의 정비를 통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안정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 본청 및 동 사무분장 신설 및 조정 [별표 1, 별표 5]

계	신설	폐지	변경	관련 부서 및 기관
43건	31건	4건	8건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미디어정보과, 총무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보건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 청 사 무 분 장 표 (제13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대 변 인	1. 구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2. 지면매체[신문, 잡지 등]를 활용한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3. 구정관련 연중 기획보도 발굴
	4. 기획보도 및 기고문 등 구정홍보 보도자료 작성
	5. 주요구정사업 브리핑 및 기자 설명회 실시
	6. 일일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분석
	7. 언론사 간행물 및 신문구독 관리
	8. 방송매체[TV, 라디오]를 활용한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9. 구정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
	10. 구정현안에 대한 방송 대담 및 인터뷰 진행
	11. TV, 라디오 활용 남동 홍보공익 캠페인 진행
	12. 주민 다중이용시설[버스, 지하철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13. 주민 다중이용시설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14. 구정홍보디자인 총괄(각종 홍보물)
	15. 홍보매체 기관(언론사 등)과의 협조사무 총괄
	16. 언론보도 및 분석을 통한 언론대응
	17. 언론대응정책수립 및 언론동향 파악
	18. 언론사 행정광고(예고)
	19. 타 부서 홍보 및 광고 관리
	20. 홍보 관련 법제도 및 언론중재 관련 사무 총괄
	21.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업무 수행
	22. 정부광고법 등 홍보관련 법제도 관련 사무
	23. 언론진흥재단 연계 업무 수행
	24. 남동사람들 제작 및 발간
	25. 사진촬영 및 사진 기록 보존
	26. 구정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활용
	27. 구정화보 제작관리 및 동영상 기록 보존
	28. 브리핑룸 운영관리
	29. 청내 공고게시판 관리
	30. 공고, 고시, 전자구보 발간 및 홈페이지 게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소통협력 담당관	1. 구민소통계획 수립·총괄 조정
	2. 구민소통 과제 발굴 및 추진 총괄
	3. 사회단체 등과의 소통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상시소통을 위한 각종 단체 및 구민과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5.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6. 구청장 동방문 및 건의사항 관리
	7.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시 운영
	8. 생활공감정책 지원 및 관리
	9. 집단·갈등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 각종 고충민원 상담·조정·처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비리와신분상조치를요구하는감사사항은제외)
	10. 갈등민원 분석 및 갈등의 다각적 해결조정 및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11. 납세자보호관 사무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감사실	1. 감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2. 자체종합감사에 관한 사무
	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사법기관 통보 및 공무원 범죄처리에 관한 사무
	5.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업무
	6.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 관리
	7. 감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8. 청렴도에 관한 사무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10.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 처리
	11. 첩보·진정·투서에 관한 사항
	12. 상급기관 이첩민원처리에 관한 사무
	13. 특정(기획)감사에 관한 사무
	14. 보조금 등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
	15.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에 관한 사무
	16. 민원사무 처리 실태 조사
	17. 신문 및 방송 보도사항 등 동향조사 처리
	18. 현장 및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19. 인권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획 예산과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구 직제 및 정원 관리
	4. 조직 및 인력 진단
	5.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6.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괄
	7.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8.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9.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1. 사무의 위임·위탁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12. 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3.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무
	14.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자매결연 사업 포함)
	15. 공무 국외여행 추진
	16. 구정 백서 발간
	17.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18.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19.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무
20. 국·시비 보조금 운영
21. 예산의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22. 투자 심사에 관한 업무
23. 지방공공기관에 관한 사무
24.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25.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2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7.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28. 예산 배정에 관한 사무
29. 예산의 전용, 이체, 이용, 변경사용
30. 기금운영 총괄조정
31. 지방채무 관리에 관한 사무
32.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무
33. 민자 유치사업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4.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 조정
35.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36. 성과관리제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무
37. 국정평가 등 외부평가 관리에 관한 사무
38.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39.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0.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의 법제심사
41.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공포
42. 고시, 공고,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43. 규정발전시책 및 제안(창안)제도 운영
44.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업무
45. 지방행정 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46.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무
47. 지방분권업무의 총괄·기획·조정 및 지원
48.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49.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사항
50. 민관협치업무에 관한 사항
51. 의회 운영 지원
52.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업무
53.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54.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55. 통계의 심사, 통제, 조사, 분석, 공표
56. 통계 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57. 산업, 광공업, 농·어업, 사업체, 인구주택 총조사 등에 관한 업무
58.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59. 용역의 심사 및 관리
60. 외부재원 확보에 관한 사무
61. 외부재원 재투자에 관한 사무
62. 당면 현안사항 및 사업부서 추진사업 총괄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일자리 정책과	1.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2.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무
	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4. 구인·구직 알선 등에 관한 사무
	5. 취업정보 전산망 운영관리

- | | |
|-----|---------------------------|
| 6. |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 7.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 8.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 9. |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에 관한 사무 |
| 10.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 11. |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12. | 소래하부공간 활용 및 조성에 관한 사무 |
| 13. | 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
| 14. |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
| 15.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종합계획 수립 |
| 16. |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무 |
| 17.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 18.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 19. | 공유경제 관련 업무 |
| 20. | 공정무역 육성 지원 |
| 21.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무 |
| 22. | 협동조합 일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
| 23. | 공공근로 사업 추진 및 관리 |
| 24.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
| 25. |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등록, 신고에 관한 사무 |
| 26. |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 27. | 생활임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 |
| 28. |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에 관한 사무 |
| 29. |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 전 총괄과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 안전문화·의식 진흥 정책에 관한 사무(주민 안전 교육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6. 주민안전정책 총괄
	7. 재난관리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전시 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9. 재난안전관리업무 실태평가 업무 총괄
	10 . 재난 공시에 관한 사무
	11 . 기타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12 . 특사경 지원 및 업무 총괄
	13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
	14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상황판단회의
	15 .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총괄
	16 . 재난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7 자연재난 총괄복구계획 추진

.
18 재해구호 총괄계획 수립
.
19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풍수해, 지진, 폭염, 가뭄, 폭설, 한파, 풍랑)
.
20 재해예방 경감사업 추진
.
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추진
.
22 지진피해저감사업(지진가속도계측기, 위험도평가단) 추진
.
2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
2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리 및 해소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
.
25 재해지도(재해정보지도) 작성
.
26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27 풍수해보험 운영에 관한 사무
.
28 자연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전시
.
29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
30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
.
31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
32 방재물자 관리
.
33 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
34 4대악 범죄 예방사업 총괄
.
35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
36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총괄관리
.
3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사무
.
38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지원 총괄
.
39 재난대비 종합훈련 총괄
.
40 국민안전교육 총괄
.
41 지역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무
.
42 제3종시설물 총괄계획 수립

.
4 3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
.
4 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총괄
.
4 5 안전점검모니터 운영 및 관리
.
4 6 안전점검의 날 운영
.
4 7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
4 8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4 9 각종 민원(방법, 어린이범죄예방 등)처리 및 CCTV 설치장소 선정
.
5 0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5 1 차량방법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5 2 저기능 CCTV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5 3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및 운영
.
5 4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5 5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구축·운영 종합 계획 수립
.
5 6 재난안전 통합관제 운영체계 도입 및 시행
.
5 7 확장서비스(u-Service) 및 지능형서비스 개발·도입
.
5 8 CCTV 통합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 9 CCTV 관련 부서·유관기관(학교, 경찰) 업무협의 및 협약 추진
.
6 0 관제인력 채용 및 관리
.
6 1 통합관제센터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6 2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
6 3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6 4 사회복지요원 관리
.
6 5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
6 6 충무계획의 총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6 7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6 8	민방위훈련, 교육의 계획수립 및 시행
.	.
6 9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	.
7 0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관리
.	.
7 1	주민신고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
7 2	민방위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
7 3	민방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	.
7 4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에 관한 사무
.	.
7 5	기타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
7 6	전시 병무에 관한 사무
.	.
7 7	사회안전 예방활동 지원
.	.
7 8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	.
7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미디어 정보과	1.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2. 블로그 기자단(남동샘터) 운영 및 활성화
	3. 소셜미디어 이벤트 및 프로모션 홍보 기획 및 진행
	4. 남동구 소셜민원 창구 운영·관리 및 소셜미디어 교육 진행
	5. 남동구 카카오플러스 친구 운영 및 관리
	6. 남동구 감성 웹진 제작
	7. '남동TV' 인터넷방송국 기획 및 운영
	8. 남동구'주민 리포터'운영
	9. 남동 핫플레이스 기획 및 제작
	10 구정 영상 콘텐츠 촬영 및 제작 관리(동영상 기록 보존 등)
	.
	11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 관리
	.
	12 대량메일발송시스템(EMS) 운영·관리
	.
	13 디지털 홍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14 정보화관련업무 종합 기획·조정 및 총괄
	.
	15 정보화 사업 법제도에 관한 사무
	.
	16 지역정보화 및 정보격차해소 추진에 관한 사무

.	.
17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무
.	.
18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개발) 조정
.	.
19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
20	전자정부 성과 관리에 관한 사무
.	.
21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제도준수에 관한 사무
.	.
22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무
.	.
23	스마트도시관련 정보화 업무 추진
.	.
24	데이터기반행정 추진(데이터수집 · 관리, 분석, 활용 및 활성화, 연계 · 구축)
.	.
25	공공데이터개방 추진(확대개방, 품질관리 및 표준화, 이용활성화)
.	.
26	정보보안에 관한 사무
.	.
2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
.	.
28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무
.	.
29	행정정보와 공간정보간 연계활용
.	.
30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31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	.
32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및 문서유통에 관한 사무
.	.
33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	.
34	웹서비스(웹사이트, 웹솔루션 등) 운영 관리
.	.
35	행정정보(지킴이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등) 운영 관리
.	.
36	행정정보망(내부, 외부망) 운영 관리
.	.
37	정부원격근무지원에 관한 사무
.	.
38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	.
39	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
.	.
40	전산기계실 및 전산교육장 운영 관리
.	.
41	행정정보화 전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
4 2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
4 3	클라우드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 및 추진
.	.
4 4	공공아이핀 및 행정전자서명에 관한 사무
.	.
4 5	행정 정보통신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	.
4 6	정보통신 법제도에 관한 사무
.	.
4 7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업무
.	.
4 8	건축물 실무종합심의 및 주택건설 승인 협의
.	.
4 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인·허가에 관한 사무
.	.
5 0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확인 민원 처리
.	.
5 1	초고속 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	.
5 2	무선 인터넷 및 무선국 운영 관리
.	.
5 3	행정전화 서비스에 관한 사무
.	.
5 4	행정팩스 민원 서비스에 관한 사무
.	.
5 5	청사 CCTV 및 영상정보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
.	.
5 6	구정 생중계 방송서비스에 관한 사무
.	.
5 7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인터넷회선, 음성회선 등의 통합 관리
.	.
5 8	통합메시징 서비스 운영 관리
.	.
5 9	영상회의실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관리
.	.
6 0	정보통신기계실 및 암호장비실 운영 관리
.	.
6 1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무
.	.
6 2	교환실 운영 관리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4.	시·구민의 날 행사 종합계획 수립 업무
5.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무
6.	공무원의 관외출장 통제
7.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운영관리
8.	직장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직장보육시설 관리 운영
10	자체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관리
.	
11	구청사 방호 및 시설의 이용·배치에 관한 사항
.	
12	의식 행사 의전 접대에 관한 사항
.	
13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표창
.	
14	공무원 건강진단 및 복리후생
.	
15	공무원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관한 사항
.	
16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	
17	공무원의 인사관리
.	
18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
.	
19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	
20	공무원 교육 및 피교육자 차출
.	
21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22	공무원증 발급 및 신원조사 의뢰
.	
23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	
24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25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무
.	
26	공무원 고충심사 처리 및 상담해결
.	
27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	
28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회의의 조정·통제
.	
29	직원복지회 운영 관리
.	
30	직장협의회 운영 및 공무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3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업무 총괄 관리
.	

3 2	공무원 및 공무원직(환경미화원 제외) 노조관리
.	
3 3	공무직(환경미화원 제외) 단체(임금)교섭
.	
3 4	공무직 및 기간제 산업안전·보건관리
.	
3 5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	
3 6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업무
.	
3 7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징계위원회, 채용절차법 운영
.	
3 8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운영
.	
3 9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전반
.	
4 0	동 기능 전환 관련업무 총괄
.	
4 1	동의 명칭 및 위치·구역의 변경
.	
4 2	지방행정동향 및 각종 여론관리
.	
4 3	확대간부회의 운영관리
.	
4 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	
4 5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리
.	
4 6	행정사 등록에 관한 사무
.	
4 7	시정업무 추진에 관한 사무
.	
4 8	일제강점하강제동원및과거사정리,6·25전쟁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사무
.	
4 9	북한이탈주민센터 시설관리운영
.	
5 0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1	동 행정의 종합관리 및 실적평가
.	
5 2	통·반조직의 승인조정 및 관리
.	
5 3	주민등록 관리 및 주민전산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	
5 4	주민등록 및 외국인 인구 통계에 관한 사무
.	
5 5	주민등록증 관리 및 주민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
.	
5 6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관한 사무

.	.
5 7	지역공동체 사무
.	.
5 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총괄
.	.
5 9	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	.
6 0	주민자치센터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
6 1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	.
6 2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및 회비 수납지원
.	.
6 3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	.
6 4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
6 5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무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평 생 교육과	1.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4. 지역우수자 대학 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보조금(초·중·고등학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경비보조금(사립유치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사무
	10.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
	11.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3.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사무
	14.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15.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관련 사무
	16.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17. 평생교육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무
	18.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1. 평생학습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기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된 사항
	23. 남동구평생학습관 관리에 관한 사무
	24. 도서관 발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공공도서관 확충(건립 및 리모델링)
	26. 구립도서관 운영관리(예산,대관,물품관리,통계,위원회 운영 등)
	27. 구립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28. 구립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자료선정,수집, 폐기,이관,배가,점검,대출,반납등)
	29. 구립도서관 전산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
	30. 도서관 간 교류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1.	통합도서 및 상호대차서비스운영
32.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33.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지원
34.	지역서점활성화지원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 화 관광과	1.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시책사업 추진
	4. 지방문화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5.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에 관한 사무
	6. 향토 문화재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무
	7.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 사업 추진
	8. 테마기획공연 등 문화예술사업 추진
	9. 남동소래아트홀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10. 소래역사관 위탁관리
	11. 청사 예술품 관리에 관한 사무
	1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13. 문화재매매업관리
	14. 매장문화재 관리
	15.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16.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17.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8. 구사 편찬 자료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무
	19. 남동구 풍물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0.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관한 사무
	21. 영화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관한 사무
	22. 공연장 등록과 공연에 관한 사무
	23. 잡지간행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4.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5.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사무
	26. 잡지 등록 및 간행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7. 여행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8.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9. 관광숙박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0.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1.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2. 관광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3. 관광 시책사업 추진
	34. 지역자원연계 관광상품 연구·개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체 육 진흥과	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체육회 운영관리
	3.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지원
	4. 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5. 남동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6. 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7.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지원
	8.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
	9.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

- | |
|---------------------------|
| 10. 국제경기대회 지원 |
| 11.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
| 12.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 13.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 지원 |
| 1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
| 15. 꿈나무스포츠단 운영 및 지원 |
| 16. 우수체육인 지원 및 지시사항 처리 |
| 17.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 |
| 18.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 19.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 |
| 20.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 |
| 21.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 22.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
| 23.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 및 수시정비 |
| 24.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수시정비 |
| 25.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
| 26.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 |
| 27. 공공체육시설 조경관리 |
| 28. 공공체육시설 청결유지관리 |
| 29.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변경 신고 처리 |
| 30. 수상레저기구 행정처분 |
| 31. 체육시설업 신고 처리 |
| 32. 신고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
| 33.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민 원 봉사과	1. 관인보관에 관한 사무
	2. 공인등록, 재등록, 폐기 및 인영 등록, 공고
	3. 민원(방문, 전화, 인터넷)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무
	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5. 민원1회 방문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민원신고센터운영
	7. 민원24 관리 운영
	8. 민원사무 제도 개선·시책 발굴
	9. 행정서비스현장 운영관리
	10. 친절 행정 추진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12. 여권발급에 관한 사무
	13.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4.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증명 발급
	나. 건축·지적민원 발급
	다.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
	라.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자에 관한 사무(체류지 변경, 제증명)
	15. 미추홀콜센터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
	17. 수형인 명부관리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무
	18. 가족관계등록 전산 운영에 관한 사무
	19. 채무불이행자 명부관리
	20. 문서수발 및 우편물 관리
	2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22. 기록물 정리·이관·폐기

23.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24.	행정정보공개운영에 관한 사무
25.	기록관 관리
26.	시청각기록물 관리
27.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28.	간행물 및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토 지 정보과	1. 지적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적 측량 성과검사 등에 관한 사무
	3.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무
	4. 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보존관리
	5.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6. 그 밖에 지적 및 측량표지에 관한 사무
	7. 토지 이동지 일제 조사
	8. 지적 공부 관리에 관한 사무
	9.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에 관한 사무
	10 지적재조사 사업
	가.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한 업무
	나. 경계결정 및 조정금 의결 등에 관한 업무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라.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관한 사무
	11 토지(임야) 신규 및 분할 등에 관한 사무
	12 토지분할허가(개발제한구역 제외)에 관한 사무
	1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무
	14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관리
	1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1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17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관한 사무
	18 지적전산 및 전산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19 조상땅 찾기에 관한 사무
	20 사단·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법인 제외)
	2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22 토지이용계획도 보존관리 사무
	23 지적 행정 일반에 관한 사무

.
2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입안·고시 사항 정리
.
2 5 도시계획, 연속지적도 오류정비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
2 6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
2 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사무
.
2 8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에 관한 사무
.
2 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
3 0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무
.
3 1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에 관한 사무
.
3 2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
3 3 외국인 부동산관리 취득 업무
.
3 4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및 이전 등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사무
.
3 5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
3 6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
3 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무
.
3 8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관리에 관한 사무
.
3 9 개발부담금 대상 관리 및 부담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
4 0 부동산실명법 운영에 관한 사무
.
4 1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사무
.
4 2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사무
.
4 3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무
.
4 4 주소 일괄변경 사무
.
4 5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관리업무
.
4 6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
4 7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무
.
4 8 국가지점번호제도 추진에 관한 사무

.	.
49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	.
50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	.
51	도로명주소 대장 발급 및 열람
.	.
52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재 무 과	1. 공사계약(하자보수관리, 주민참여감독)
	2. 용역계약(일반, 폐기물, 설계용역)
	3. 물품계약(관급자재, 수리·수선, 제조)
	4.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결산
	5. 통합자금운용관리
	6.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7. 세출예산지출(일반, 국비, 시재배정)
	8. 공유재산관리(취득·처분·유지관리)
	9.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10. 시 및 구 공유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및 유지관리
	11. 구청사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12. 물품관리(정수관리, 재물조사) 및 불용결정·처분
	13. 공용차량관리
	14. 구청사 관리
	15. 공공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 무 과	1. 금고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
	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및 폐지
	3. 지방세정 운영 평가 및 표창
	4. 지방세 진산화 추진 및 관리
	5. 지방세 수입 및 결산
	6. 영수증 원본 수불 및 관리
	7. 지방세, 농특세 등 집계 및 수납관리
	8. 세정자료의 조사와 통계연감 작성
	9.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업무
	10.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11.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12.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업무
	13. 기부금품 모집 심사에 관한 사항
	14. 수입금 출납사무
	15.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16.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계획수립 및 전망분석
	17. 지방세 가산금 조정
	18. 지방세 구제업무(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20. 지방세 납세홍보 및 교육

21.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22.	지방세 독촉고지 및 체납액 징수
23.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4.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25.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26.	재산조회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27.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8.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9.	지방세 세무조사
30.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31.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3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3.	기타 개별주택과 관련한 업무
34.	주민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5.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유사한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 입 징 수 과	1.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감독
	2.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 및 징수 실적·전망분석
	3. 세외수입의 수납관리 및 전산화 추진
	4. 세외수입 집계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
	5.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6. 세외수입 체납·결손처분 등 징수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과년도분-자동차관리과관리분제외)
	7. 세외수입 체납자 행정규제 관한 사항 (일반회계과년도분-자동차관리과관리분제외)
	8.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9.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
	10 총괄 채권관리 및 보고업무
	11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업무
	12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13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계획수립 및 전망분석
	14 지방세 가산금 조정
	15 지방세 구제업무(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17 지방세 납세홍보 및 교육
	18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19 수입금 출납사무
	20 지방세 체납관리·독촉고지 및 체납액 징수

.	.
2 1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유사한 업무에 관한 사항
.	.
2 2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
2 3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관한 사무
.	.
2 4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
2 5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
2 6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
2 7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
2 8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관리에 관한 사무
.	.
2 9	지방세 체납정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	.
3 0	지방세 징수포상금 업무
.	.
3 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체납 처분
.	.
3 2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규제
.	.
3 3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	.
3 4	교부청구 업무
.	.
3 5	지방세 카드납부 관리
.	.
3 6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	.
3 7	징수촉탁서 처리업무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업 지원과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2. 해외 단체(개별) 참가 지원 사업
	3. 해외지사화 사업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5.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6. 수출지원 사업
	7. 구청장 기업탐방
	8. 기업 홈페이지 운영
	9. 남동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사업
	1 0 경제 동향 분석
	.
	1 1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 사업

.
1 2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
.
1 3 국제지식재산권분쟁예방 지원사업
.
1 4 기술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
1 5 중소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
1 6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
1 7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1 8 기타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지원
.
1 9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
2 0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사업
.
2 1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2 2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
2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업무
.
2 4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
.
2 5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융자지원 업무
.
2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
.
2 7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업무
.
2 8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
2 9 산업단지 관리 업무
.
3 0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
.
3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업무
.
3 2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관련 업무
.
3 3 계량기(증명, 수리, 제작업) 등록
.
3 4 계량기 정기(수시) 검사
.
3 5 전기사업법 관련 업무
.
3 6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안전관리 및 행정처분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생 활 경제과	1. 전통시장활성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3. 시장정비사업 인가에 관한 사무
	4.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
	5.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무
	6. 시장등록 및 상인회 등록관련 업무
	7. 시장 상권활성화, 경영현대화에 관한 업무
	8. 미소금융관련 업무(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련)
	9.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무
	10 지역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1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12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13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사무
	14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관련 업무
	15 담배도·소매업에 관한 사무
	16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에 관한 사무
	17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대부업에 관한 사무
	19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20 새마을금고인가 및 지도관리
	21 가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2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허가(신고) 및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에 관한 사무
	23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에 관한 사무
	24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저장·가스용품 제조 허가(신고) 및 특정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25 도시가스 충전 허가, 공사계획 승인(신고)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26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무
	27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등록(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8	LED조명기기 관련 사무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사무
30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관련 사무
31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무
3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3	석유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
34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무
35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사업 관련 사무
36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 위반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제거에 관한 사무
37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 위반 불법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8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시설물 유지 및 관리
39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사용수익허가 및 세입 징수 관리
40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재산사용 관리 및 감독
41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관리·운영협약 위반사항 지도·감독·행정처분에관한사무
42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편의시설 활성화 관련 사무
43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44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농 축 수산물	1. 농정, 양정,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지관리에 관한 업무
	3. 농지전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4. 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업무
	5.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농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무
	7. 농작물병충해 방제 등에 관한 사무
	8.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
	9.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10. 전작,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 1	도시농업에 관한 업무
.	
1 2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1 3	농·축산물 유통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1 4	농업, 축산 통합 실시사업 추진
.	
1 5	양정관련 업무
.	
1 6	농·어업 경영체 지원업무
.	
1 7	곤충산업 지원 업무
.	
1 8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	
1 9	말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	
2 0	축산진흥에 관한 업무
.	
2 1	축산물 인·허가 업무
.	
2 2	가축 방역 및 통계 등에 관한 업무
.	
2 3	농·축산업 재해대책 추진 업무
.	
2 4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
.	
2 5	동물판매업 등록 및 동물등록에 관한 사무
.	
2 6	동물병원, 동물약국 인·허가
.	
2 7	가축사육업 허가 및 축산차량등록제 업무
.	
2 8	어장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2 9	어선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3 0	소형선박 저당 및 압류에 관한 사무
.	
3 1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사무
.	
3 2	낙시터업 허가 ·등록 및 낙시어선 신고에 관한 사무
.	
3 3	자율관리어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3 4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	
3 5	수산물 가공업에 관한 사항

.	.
3 6	연안(구획)어업에 관한 사무
.	.
3 7	소래 국가어항 개발완료 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
3 8	어업인 육성 및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	.
3 9	국민연금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사무
.	.
4 0	낙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
4 1	해양수산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	.
4 2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무
.	.
4 3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	.
4 4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무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 지 정책과	1. 남동구 사회복지사무 조정·통계 등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 호국보훈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무
	5.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조정·시행·평가에 관한 사무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무
	8.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무
	1 0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1 1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무
	.
	1 2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
	1 3 이웃돕기에 관한 사무
	.
	1 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복지 총괄
	.
	1 5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관한 사무
	.
	1 6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
	1 7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
	1 8 방문형서비스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무

.	.
19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	.
20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관한 사무
.	.
21	자활기금 운용·관리
.	.
22	그 밖에 주민생활국 사무의 총괄 및 지원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 회 보장과	1.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2.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관한 사무
	4.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무
	5.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노숙인 등이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노 인 장애인과	1. 노인복지 증진 및 효 실천에 관한 사무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업무관련)
	3. 기초연금에 관한 사무
	4.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5. 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사업에 관한 사무
	6. 장사 등에 관한 사무
	7.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8. 노인단체에 관한 사무
	9. 남동사할린센터 시설관리운영
	10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사항
	.
	11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무
	.
	13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1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무
	.
	15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무
	.
	16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
	17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무
	.
	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19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추진에 관한 사무
20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21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무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여 성 가족과	1.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
	2.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무
	3.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가족친화 인증에 관한 사무
	4. 양성평등에 관한 사무
	5. 디지털폭력예방에 관한 사무
	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7.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
	8.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방지에 관한 사무
	9.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무
	10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무
	11 성폭력·가정폭력 및 여성상담에 관한 사무
	12 남동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 시설관리운영
	13 남동하모니센터 시설관리운영
	14 다문화가족관리 및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15 다문화가정의날, 세계인의날행사운영(각종다문화·외국인관련행사)
	16 결혼중개업관리 및 운영지도(인·허가, 지도감독)
	17 거주외국인지원 및 민원사무
	18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9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20 청소년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무
	21 청소년 건강지원에 관한 사무
	22 청소년 복지시설 신고
	23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24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사무

.	.
25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	.
26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	.
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	.
28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무
.	.
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무
.	.
30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	.
31	숙박형등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	.
32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	.
3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무
.	.
34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	.
35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무
.	.
36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 사무
.	.
37	청소년 축제 발굴·지원·운영에 관한 사무
.	.
3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	.
39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아 동 복 지 과	1.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
	3.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에 관한 사무
	5. 국내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무
	6. 결식우려아동 급식에 관한 사무
	7.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무
	8.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9. 아동복지시설 설치·변경 신고 수리
	10 아동복지종합센터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원
	.
	11 피해아동보호 종합계획 수립
	.
	12 아동학대 실종 관련 사무
	.
	13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 전담

.	.
14	관계기관 협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인식개선 업무
.	.
15	요보호아동 시설입소에 관한 사무
.	.
16	그룹홈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원
.	.
17	온종일지역돌봄협의체 운영
.	.
18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및 운영관리
.	.
19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원
.	.
20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및 정원·정산서 관리
.	.
21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	.
22	드림스타트 종합계획
.	.
23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슈퍼비전 설치·운영
.	.
24	드림스타트 조직화 및 협력·후원기관 발굴 및 관리
.	.
25	분야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운영
.	.
26	대상아동 인테이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	.
27	아동통합사례관리사·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운영·관리
.	.
28	실무워킹그룹 운영 관리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보 육 정책과	1.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집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무
	3. 무상보육 지원에 관한 사무
	4. 영유아무상보육 자격채정에 관한 사무
	5.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무
	6. 어린이집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7. 보육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무
	8.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9.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무
	10 어린이집 인가, 휴·폐업
	.
	11 특수어린이집 지정 및 관리
	.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
	13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
14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
15	공동육아나눔터업무
.	.
16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
.	.
17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
18	어린이집 지도점검
.	.
19	어린이집 행정처분
.	.
20	보육멘토 업무
.	.
21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청 소 행 정 과	1.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가정사업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수도권 매립지 반입 관련 사무
	5.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에 관한 업무
	6. 환경미화원 관리 및 단체(임금)교섭
	7. 국토 대청결운동 업무 추진
	8. 도심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보관대 등)
	9.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사무
	10. 해안쓰레기 정비에 관한 사무
	11. 적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12. 각종 청소장비 관리 운영
	13.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무
	14.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수급 관리
	15.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6. 자원순환업무(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등)에 관한 사항
	17. 재활용 활성화 추진 사업에 관한 업무
	18. 재활용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에 관한 사무
	19.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사무
	20. 대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21. 그 밖에 폐기물 및 재활용등에 관한 사무
	2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관련 업무
	2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
	2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
	2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업무
	2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2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부담금에 관한 업무
	28. 사업장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29.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
	30. 폐기물처리신고 및 지도점검
	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업무

- | |
|---|
| 33.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업무 |
| 34. 사업장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업무 |
| 35. 사업장폐기물(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의료) 신고 및 지도점검 |
| 36.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관한 업무 |
| 37. 폐기물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올바른시스템 지원 업무 |
| 38. 사업장폐기물 법정교육 및 통계에 관한 업무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환 경 보전과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3.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5. 물의 재이용 관리에 관한 사무
	6. 자연보호 관련 업무
	7. 수렵면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환경측정망 관련 업무
	9. EM사업과 관련한 사무
	10 환경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11 녹색제품 구매 관련 업무
	12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절수설비 의무화 제도에 관한 사무
	15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17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8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0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무
	21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관리
	22 환경기술인 교육관리 등에 관한 사무
	23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에 관한 업무

.	.
2 4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
.	.
2 5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
2 6	먹는 물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및 관리
.	.
2 7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 구제 관련 사무
.	.
2 8	빛공해 방지 등에 관한 사무
.	.
2 9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
3 0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
.	.
3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일반 사무
.	.
3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검사
.	.
3 3	하수·분뇨관련영업자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
3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
3 5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계약등에 관한사무
.	.
3 6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신고) 및 검사
.	.
3 7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	.
3 8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에 관한 사무
.	.
3 9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사무
.	.
4 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
4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
.	.
4 2	의제21 추진지원에 관한 사무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 시 경관과	1. 가로정비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상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제거에 관한 사무 (전통시장내적치물경계선(고객선)과분리된불법노점및적치물의경우포함)
	3. 노점상 실명제 실시지역 실명제노점상 선정 및 점용허가

4.	불법 노점 및 적치물(시설, 설치물 제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전통시장내적치물경계선(고객선)과분리된불법노점및적치물의경우포함)
5.	옥외광고물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업 인허가사무
7.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9.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10.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1.	간판개선에 관한 사업
12.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한 사무
13.	도시경관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14.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15.	경관사업 추진 및 협의에 관한 사무
16.	경관 협정 및 운영회에 관한 사무
17.	경관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18.	공공디자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 원 녹지과	1. 공원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체육시설 제외)
	3.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5.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
	6. 과태료 부과 징수
	7. 기타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대장·도시자연공원구역 대장 작성
	9.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0. 공원·녹지 조경관리 등 유지관리 사무
	11. 육교형 생태통로 유지관리(수목, 난간, 테크 등 조경분야)
	12. 공공공지 관련 업무(조성 및 관리)
	13.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14.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15.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무
	16. 도시공원 시범사업
	17. 사업 관련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8. 시설녹지의 설치
	19. 공원녹지 리모델링에 관한 사무
	20. 장기미집행시설(공원·녹지) 집행계획 수립 추진
	21. 산림 기본 계획 수립
	22. 산림 문화·휴양 기본계획 수립
	23. 산림보호,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무
	24. 임목 벌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5. 임산물 굴취, 채취 허가
	26.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무
	27. 공·사유림 내 채석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8. 국토 공원화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29. 도시녹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0.	녹지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31.	도심 속 쉼터 조성 및 관리
32.	둘레길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3.	숲 치유사업에 관한 사무
34.	광장(일반,경관)의 설치 및 관리
35.	꽃양묘장 운영 및 관리
36.	세외수입(수목피해 변상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교 통 행정과	1. 교통 기획의 종합조정
	2.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3. 지역 교통안전계획에 관한 사무
	4.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 징수
	5. 지하철 및 철도 관련 업무 행정지원
	6. 교통 분야 공익요원 지도 관리
	7. 교통안전관련 시설사업 추진
	8.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9.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역전광장) 관한 시설물 유지관리
	10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11 .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사무
	가.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나.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업무
	다.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12 . 공영·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기계식 포함) 관리에 관한 사무
	나. 그린파킹(담장허물어 내집안 주차장 만들기) 사업
	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 운영에 관한 사무
	13 . 마. 민영주차장 설치 등 통보처리에 관한 사무
	14 .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등에 관한 사무
	15 .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무 등에 관한 사무
	16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등
	17 .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
	18 .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공무원 임면권
	19 .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및 단속장비 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동차 관리과	1.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2.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무
	3. 시내버스(지선버스) 및 택시 운송에 관한 업무
	4. 자동차 운송 주선업에 관한 사무
	5. 자동차 창고업에 관한 사무
	6. 자가용 자동차 사용에 관한 사무
	7.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행정처분
	8. 화물자동차(용달, 개별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자동차에 대한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1 이륜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자동차검사 관련업무 제외) 등에 관한사무
	13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
	14 자동차관리과 과태료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15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 및 통고처분
	16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17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무
	18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단속에 관한 사무
	19 무단방치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
	20 자동차 무단방치사건 수사 및 통고처분
	2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의 처리
	22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3 자동차 압류등록의 처리
	24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에 관한 사무
	25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
	26 자동차의 신규등록·등록증의 교부
	27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28 자동차등록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

29	자동차 변경·이전·말소등록
30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3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32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33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등록 및 변경등록
	나. 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라.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
	바.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사. 과태료 처분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 시	1. 사업 관련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무
재 생 과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3.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6. 기타 도시계획 관련 업무
	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일반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무
	10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무
	11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2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관련 잔여사무(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제증명 발급, 각종 공사시행 등)
	13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16 도시재생사업 추진
	17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18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19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무

.	.
2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	.
21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영개발과	1. 소래 국가어항 개발
	2.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업무
	3. 연안정비사업 시행
	4. 연안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시공 및 감독
	5. 소래구역(특별계획구역) 개발 및 정비 사업
	6. 소래구역(특별계획구역) 건축행위(허가,신고 등) 가.부 결정 및 불법 건축행위 단속
	7. 소래 국가어항구역 건축행정 업무
	가. 건축 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다.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단속·정비 등에 관한 사무
	라. 세외 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마.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바. 건축허가·신고관련업무에관한사항
	사.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아. 공작물 축조 신고 등에 관한 사무
	자.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업무
	차.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소래갯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9.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10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11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
	.
	12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업무
	가. 관광지역간 연계수단 도입
	나. 유희토지 개발방안 수립
	다. 집객시설 배치 및 사업시행
	1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남동구 전략 사업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설과	1. 건설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 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
	3. 도로 안내표시판 설치 및 수리에 관한 사무
	4.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 관리에 관한 사무
	5.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건설기계)에 관한 사무
	6. 도로굴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7. 전문 건설업 등록 및 면허관리에 관한 사무

8.	건설기계 관련 업무 총괄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무이외의 건설기계에 관한 사무
9.	도로건설·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10	토목, 건설 공사의 조사, 측량, 시행에 관한 사무
11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12	보도,육교,승강기(E/L)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13	교량,육교,지하차도 등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14	육교형 생태통로 유지관리(콘크리트 구조물)
15	구월공공주택지구 방음벽 유지관리
16	수로원 배치관리 및 도로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17	사도 개설 허가에 관한 사무
18	기타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사무(기존건축물증축부분이도로를침범한경우제외)
19	도로사업 관련 보상에 관한 사무
20	골재채취 허가·등록에 관한 사무
21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사무(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한함. 단, 노점상·노점판매대는 제외)
22	자전거이용시설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3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4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5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6	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무
27	자전거 보관대, 대여소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8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9	공동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방재하수과	1. 방재시설(저류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2.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작성에 관한 사무
	4.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밸브,차수관 등)설치에 관한 사무

5.	소래포구 일원 대조기 등 침수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6.	방재시설 및 물자(수방자재)관리에 관한 사무
7.	방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8.	해수침투방지용 수문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방재시설 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10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고시 등에 관한 사무
.	
11	준설원 배치관리 및 하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	
1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13	하수도 특별회계(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무
.	
14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홍보에 관한 사무
.	
15	소하천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	
16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에 관한 사무
.	
17	지방 하천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	
18	국공유재산(하천,구거)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19	지하수특별회계에 관한 사무
.	
20	개인 배수설비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	
21	공간정보시스템(GIS) DB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22	오수중계펌프장(차집관리 외 지역)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축과	1. 건축 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축 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정비 등에 관한 사무(GB, 도로 및 인도 제외)
	5. 항측 적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GB, 도로 및 인도 제외)
	6. 세외 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7. 건축위원회설치및운영
	8.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 제한에 관한 사무
	9.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0. 건축허가·신고관련업무에관한사항
	11.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12. 공사감리업무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무
	13.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14. 공작물 축조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5.	건축 시공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건축물대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7.	건축물대장 표시 등에 관한 사무
18.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 업무에 관한 사무
	가. 해체 및 멸실 신고 처리
	나. 해체 공사 허가
	다.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20.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업무
21.	건축물대장 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
22.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무
24.	건축물 분양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5.	빈집정비 등에 관한 업무
26.	소규모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업무
27.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9.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사무
30.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1.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
3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 동 주택과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업무
	3.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현장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5.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6.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7.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9.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10 .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11 . 세외 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12 . 임대 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운영
	14 . 미분양주택 관리 사무
	15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에 관한 사무

.	.
16	주택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	.
17	임대주택 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	.
18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무
.	.
19	주거급여사업에관한사무
.	.
20	주택바우처에 관한 사무
.	.
21	주택 개량 지원 사업
.	.
22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 사업
.	.
23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
.	.
24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	.
25	공동주택 관리주체 외부 회계 감사
.	.
26	공동주택 감리자 모집 및 승인 업무
.	.
27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업무
.	.
28	소규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업무
.	.

[별표 5]

동의 사 무 분 장 표 (제19조 관련)

구 서 명	분 장 사 무
동행정 복지센터	1. 인사, 감사, 복무, 보안, 문서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동 재산 및 물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당직 및 비상근무
	5. 통·반(장) 관리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생단체 등 각종 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센터 운영
	10. 구정홍보 및 구 주관 행사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11.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12. 통계조사 지원
	13.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에 관한 사항
	14.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
	15. 납세완납(징수유예, 비과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6.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
	17. 취학 아동에 관한 업무
	18. 민방위대 편입 지원 신고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
	19.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20.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1.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 및 급여신청, 복지증명서 발급
	22.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관리
	24.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25. 서비스 연계 업무
	26. 결식아동접수·신청
	2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무
	28. 기타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9. 청소년지도위원 추천 및 관리
	30. 매·화장 및 묘지개장 신고처리
	31. 공공근로 신청에 관한 사무
	32. 가정사업계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 처리 등
	33. 산불 예방 및 감시
	34. 도로 점검 및 순찰
	35. 도로 환경 미화원 관리
	3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37.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8. 구인·구직 알선 등에 관한 사무
	39. 남동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
	40.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41.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봉사단체 운영
	42.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지급
	43.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44. 자활사업 연계
45. 정부양곡 신청 접수
46.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47.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48. 노인 교통카드·효도카드 발급
49.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접수
51. 아동급식 신청 접수
52.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53.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54. 보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접수
55. 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5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57.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처리
58.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사항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1-1489호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설사무 및 조정사무의 정비를 통해 사무배분 원칙 및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 본청 및 동 사무전결 사항 신설 및 조정[별표 1, 별표4]

계	신설	폐지	변경	관련 부서 및 기관
223건	139건	39건	45건	감사실,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미디어 정보과,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물, 여성가족과, 아동 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보건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7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신설사무 및 조정사무의 정비를 통해 사무배분 원칙 및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 본청 및 동 사무전결 사항 신설 및 조정 [별표 1, 별표 4]

계	신설	폐지	변경	관련 부서 및 기관
223건	139건	39건	45건	감사실,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토지정보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보건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 참고자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 통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대변인, 실, 담당 관, 과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복무						
	가.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1) 부구청장						○
	(2) 실·국장급 및 4급 이상 산하기관장					○	
	(3) 과장급 및 5급 이하 산하기관장				○		
	(4) 6급 이하			○			
	(5) 1일 이내로써 동일 부서의 3인 이하 관외 출장			○			
	나. 휴가, 지참, 조퇴, 외출 및 초과근무						
	(1)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						
	(가) 부구청장						○
	(나) 실·국장급 및 4급 이상 산하기관 장					○	
	(다) 과장급 및 5급 이하 산하기관장				○		
	(라) 6급 이하			○			
	(2) 초과 근무에 대한 사무						
	(가) 초과 근무 명령	기안			○		
	(나) 초과 근무 확인	기안		○			
2.	회의에 관한 사항						
	가. 유관, 산하기관장 및 이에 준한 중요한 회의		기안				○
	나. 과장, 주무담당 회의	기안			○		
	다. 기타 직원회의	기안		○			

3.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기안				○
	나.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 제출	기안			○		
	다. 기타 경미한 자료처리 및 보고	기안		○			
	라. 소관업무의 통계처리						
	(1) 중요한 통계	기안				○	
	(2) 경미한 통계	기안		○			
	마. 행정규정의 신설,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4.	소관부서별 예산						
	가.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나. 예산배정 요구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안		○			
	다. 성립전 경비사용 승인 요청	기안			○		
	라. 예산의 변경(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기안			○		
	마. 예비비 사용 대상사업 계획		기안			○	
	바.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기안			○		
	사. 예산결산 자료 제출	기안			○		
5.	부서별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응소, 제소 및 상소(포기)						
	(1) 중요소송		기안				○
	(2) 일반소송	기안			○		
	나.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지정·변경 요청	기안		○			
	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등 소송수행	기안		○			
	라. 소송 진행상황 보고	기안		○			
	마. 소송종결 처리(패소원인, 대책포함) 보고						
	(1) 중요소송	기안			○		
	(2) 일반소송	기안		○			
	바. 구상권 행사	기안			○		
	사.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 및 그 비용의 회수	기안			○		
	아.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기안			○		
	자. 공탁금 회수	기안			○		
6.	행정심판 수행	기안		○			

7.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	기안					○
	나. 자치법규의 법제심사 의뢰	기안		○			
	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안		○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요구	기안		○			
8.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가. 고시, 공고 및 공고문 결정	기안		○			
	나. 기타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기안		○			
9.	부서별 의회에 관한 사항						
	가. 의안 제출	기안					○
	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제소		기안				○
	다. 선결 처분 결정		기안			○	
	라. 선결 처분 의회 보고	기안		○			
	마. 의회에서 이송된 청원 처리 보고	기안				○	
	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안			○		
	사. 시 및 구정정책 사항의 서면질의 답변		기안		○		
	아. 의회 출석요구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1) 구청장, 부구청장		기안				○
	(2) 기타	기안			○		
10.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가. 50인 이상이 제기한 다수인 관련 민원		기안				○
	나.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기한 다수인 관련 민원	기안				○	
	다. 20인 미만인 제기한 다수인 관련민원	기안			○		
	라. 다수인관련 민원취하, 타기관 이송	기안		○			
11.	대통령실 이첩 민원						
	가. 처리결과에 대한보고의 기한을 정한 지정 민원	기안				○	
	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기한을 미지정한 일반민원	기안			○		
12.	공사 및 용역 집행에 관한 사항						
	가.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고시		기안				○
	나. 중요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다. 공사 착공 명령과 감독	기안		○			
	라. 공사 감독원의 지정	기안		○			
	마. 공사 감독일지 및 인부 점검	기안		○			
	바. 계약 심사 의뢰	기안		○			
	사. 설계 범위 내 인부 고용	기안		○			
	아.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원의 지정 및 교체	기안		○			
	자. 공사 하자 보수 명령	기안		○			
	차. 공사기간 연기 명령	기안		○			
	카. 도급공사의 중지 및 해지 명령	기안		○			
	타. 공사용 자재의 공차 사용	기안		○			
	파. 검사 및 검수입회 명령	기안		○			
	하. 착공 및 준공처리 통보	기안	○				
	거. 공사기간 변경(공사, 용역)						
	(1) 1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기안			○		
	(2) 1억원 미만의 일반공사	기안		○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기안			○		
	(4) 5천만원 미만의 용역	기안		○			
	너. 공사, 용역, 물품(관급) 계약의 설계변경 (증감액 기준)						
	(1) 1억원 초과설계변경	기안					○
	(2) 1억원 이하설계변경	기안				○	
	(3) 5천만원 이하설계변경	기안			○		
	(4) 2천만원 이하설계변경	기안		○			
13.	상훈에 관한 사항						
	가. 기본 방침에 의한 표창 내신	기안		○			
	나. 특별 방침에 의한 표창 상신	기안			○		
	다. 정부 포상 및 표창 추천	기안			○		
14.	위원회 운영 관리 및 위원 위·해촉						
	가. 위원장이						
	(1) 구청장 또는 외부 인사		기안				○
	(2) 부구청장		기안			○	

	(3) 국장	기안			○		
15.	행정 자료 발간						
	가. 자료 발간 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 수집 및 조정	기안		○			
	다. 최종안 확정	기안			○		
	라. 발간 및 배부	기안		○			
16.	충무 계획 운영 관리						
	가. 충무 계획 수립	기안					○
	나. 충무 계획 시행 및 관리	기안		○			
17.	공시 송달						
	가. 소재 불명 확인서 및 공고, 공탁	기안		○			
	나. 공시 시달 승인 신청	기안			○		
18.	공무원 해외연구 및 해외견학에 관한 사항 (시책관련)						
	가. 해외연수계획 수립	기안			○		
	나. 해외여행 변경	기안		○			
	다. 해외여행 귀국 보고	기안		○			
19.	기타 일반 서무						
	가. 사무 처리 조정						
	(1) 실·국 간의 경우	기안			○		
	(2) 과 내·외간의 경우	기안		○			
	나. 각종 행사 관련 사항						
	(1) 구청장 참석		기안				○
	(2) 부구청장 참석		기안		○		
	(3) 국장 참석	기안		○			
	다. 소속 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라. 사무 인수인계						
	(1) 부구청장	기안					○
	(2) 국장	기안			○		
	(3) 실·담당관·과장	기안		○			
	마. 기간제근로자 관리						

	(1) 기간제근로자 고용 결정	기안		○			
	(2) 4대보험 취득, 상실	○					
	바. 소관 업무 중 사업소, 동 위임사무 지도 점검	기안			○		
	사. 물품 청구, 수령, 반납	기안		○			
	아. 소속부서 금품 출납 명령	기안		○			
	자. 차량 배차 신청	기안		○			
	차. 소속 공익 근무 요원 관리	기안		○			
	카. 물품 관리 및 보관	기안		○			
	타. 각종 간행물의 배부	기안	○				
	파. 차량 운행 및 관리	기안	○				
	하. 각종 일지 및 일보 처리	기안	○				
	거. 민간인 포상	기안			○		
	너. 공공 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 감독 지정 의뢰	기안		○			
20.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특별회계 포함)						
	가. 계약체결 상황보고	기안		○			
	나. 실적증명	기안	○				
	다. 입찰공고						
	(1) 1억원 이상의 일반 공사	기안			○		
	(2) 1억원 미만의 일반 공사	기안		○			
	(3) 5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4)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라. 지명경쟁 입찰통지	기안			○		
	마. 견적서 제출요구	기안		○			
21.	세출예산 집행품의						
	가. 공사 또는 토지매입						
	(1) 5억원 초과 일반공사	기안					○
	(2) 5억원 이하 일반공사	기안				○	
	(3) 3억원 이하 일반공사	기안			○		
	(4) 5천만원 이하 일반공사	기안		○			
	나. 제조·구매 및 용역						
	(1) 3억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2) 3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3)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4)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다. 그 밖의 사항						
	(1) 1건당 2억원 초과						○
	(2) 1건당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기안				○	
	(3) 1건당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임시 일상경비	기안			○		
	(4) 1건당 5천만원이하, 법정경비	기안		○			
22.	부정당업자의 제재(특별회계 포함)	기안			○		
23.	자금송부 및 교부(특별회계 포함)	기안		○			
24.	관급자제 구매(특별회계포함)						
	(1) 5천만원 이상	기안			○		
	(2) 5천만원 미만	기안		○			
25.	회계직 공무원 변경	기안		○			
26.	지방행정정보은행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	○					
27.	홈페이지 관련 자료 관리	○					
2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료 제공	기안		○			
29.	행정대집행 단속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사전 계고 및 통지	기안		○			
30.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기안		○			
31	징수관의 직무위임						
	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한 세입의 징수결정	기안		○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기안		○			
	다. 1천만원 초과 과오납금 반환	기안			○		
	라. 1천만원 이하 과오납금 반환	기안		○			
	마.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초과 징수결정	기안			○		
	바.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 징수결정	기안		○			

32	재무관의 직무위임						
	가. 추정금액 1억원 초과 공사 또는 부동산 매입	기안			○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부동산 매입	기안		○			
	다. 5천만원 초과 제조, 용역, 물품의 구입 [조달구매 포함]	기안			○		
	라. 5천만원 이하 제조, 용역, 물품의 구입 [조달구매 포함]	기안		○			
	마.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업무추진비	기안		○			
	바.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안		○			
	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 지출	기안		○			
	아. 위 이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초과	기안			○		
	자. 위 이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	기안		○			

대변인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대 변 인	부 구 청 장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2. 구정홍보물 제작·관리					
가. 홍보영상 제작 기획	기안				○
나. 홍보사진 및 동영상 촬영·제작 활용	기안		○		
다. 홍보사진 및 동영상 기록 보존(슬라이드 포함)	기안		○		
3. 지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무					
가. 지면매체[신문, 잡지 등] 활용 구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구정관련 연중 기획보도 발굴	기안		○		
다. 기고문 및 기획보도 등 보도자료 작성	기안		○		

	라. 주요구정사업 브리핑 및 기자설명회, 인터뷰 관리	기안		○		
	마. 일일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분석	기안		○		
	라. 언론사 간행물 및 신문구독 관리	기안		○		
4.	방송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무					
	가. 방송매체[TV, 라디오]활용 구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구정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	기안		○		
	다. 구정현안에 대한 방송대담 및 인터뷰 준비 및 진행	기안		○		
	라. TV, 라디오 활용 홍보 캠페인 제작 및 진행	기안		○		
5.	주민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구정홍보 사무					
	가. 주민다중이용시설[지하철, 버스 등]활용 구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다중이용시설 홍보 진행 및 운영	기안		○		
6.	구정홍보 디자인 총괄	기안		○		
7.	홍보매체기관(언론사, 방송사 등)과의 협조사무					
	가. 언론대응정책 수립		기안			○
	나. 언론보도 및 분석을 통한 언론대응	기안		○		
	다. 언론사 행정광고(예고)	기안		○		
	라. 타 부서 광고 관리	기안		○		
8.	홍보관련 법제도 및 언론중재 사무					
	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업무 수행	기안				○
	나. 언론진흥재단 관련 사무	기안		○		
	다. 정부광고법 등 홍보관련 법제도 사무	기안		○		
9.	남동사람들 제작 및 발간					
	가. 남동사람들 제작 계획 수립	기안			○	
	나. 남동사람들 제작 및 발간	기안		○		
10.	공고, 고시, 전자구보 관련사무					
	가. 구보발간	기안		○		
	나. 구정홍보게시판 운영	기안		○		
11.	브리핑룸 운영 및 관리	기안		○		

소통협력담당관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담 당 관	부 구 청 장	
1. 구민소통계획 수립·총괄 조정		기안			○
2. 구민소통 과제 발굴 및 추진 총괄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세부 과제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3. 사회단체 등과의 소통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세부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4. 상시 소통을 위한 각종 단체 및 구민과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세부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라. 결과보고	기안				○
마. 구민 의견사항 관련부서 협의	기안		○		
바. 구민 의견사항 회신 (부서 소관사항 제외)	기안		○		
5.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세부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라. 운영결과 보고	기안				○
마. 만남의 날 건의사항 관련부서 협의	기안		○		
바. 만남의 날 후속 조치 (부서 소관사항 제외)	기안		○		
6. 구청장 동방문 및 건의사항 관리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다. 운영결과 보고	기안				○
	라. 구민 건의사항 관련부서 협의	기안		○		
	마. 구민 건의사항 회신 (부서 소관사항 제외)	기안		○		
7.	온라인(모바일) 소통창구 운영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다. 구민 민원사항 접수 및 분류	기안		○		
	라. 민원사항 담당부서 지정	기안		○		
	마. 부서 답변처리 확인 및 통계관리	기안		○		
8.	생활공감 정책 지원 관리					
	가.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요원 관리	기안		○		
	나. 모니터요원 활동 지원	기안		○		
9.	직소 민원					
	가. 직소민원 신청서 접수	기안		○		
	나. 직소민원 사전 상담	기안	○			
	다. 직소민원 내용 검토·분석	기안	○			
	라. 직소민원 상담자료 수집	기안	○			
	마. 민원내용 관련부서 협의	기안		○		
	바. 민원상담 처리(서면) 회신 (부서 소관사항 제외)	기안		○		
10.	고충민원(집단·갈등민원 포함) 상담 및 조사					
	가. 고충민원 조사	기안	○			
	나. 민원관련 자료 수집	기안	○			
	다. 고충민원 회신 (부서 소관사항 제외)	기안		○		
	라. 관련부서 협의	기안		○		
	마. 관련부서 답변사항 관리	기안		○		
11.	공공갈등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갈등민원 조사 및 자료 수집	기안	○			
	다.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 및 매뉴얼보급)	기안		○		
	라. 공공갈등관리 결과보고	기안		○		
12.	납세자보호관 업무					
	가. 납세자보호 관련 추진(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납세자보호 관련 업무 신청서 등 접수	기안		○		

다.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자료수집	기안	○			
라. 납세자보호관 업무관련 부서 요구권	기안		○		
마. 납세자보호 관련 결과 통지	기안		○		

감 사 실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장	부 구 청 장	
1. 감사 기본(종합) 계획 수립					
가.연간 자체감사 및 감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감사계획의 조정 및 변경	기안		○		
2.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조치					
가. 자체감사 결과보고	기안		○		
나. 감사 결과 처분 지시	기안		○		
다. 감사실시 통보 및 일정 변경	기안		○		
라. 감사자료 제출 요구	기안		○		
3. 상급기관 감사준비 및 감사결과 처리					
가. 수감준비 계획	기안		○		
나.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기안		○		
다. 감사결과 처리 및 보고					
(1) 중요 사항		기안		○	
(2) 일반 사항	기안		○		
4.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가. 신분상의 조치					
(1) 징계		기안			○
(2) 경고(훈계)	기안		○		
나. 재정상의 조치		기안		○	
5. 물품 망실, 훼손사고 조사 및 처리	기안		○		
6. 하명, 첩보, 진정, 투서에 관한 사항					

	가. 중요 사항	기안				○
	나. 일반 사항	기안		○		
7.	사법기관 통보 범죄 공무원 처리					
	가. 중요한 범죄 사실(징계이상 해당)		기안			○
	나. 경미한 범죄 사실(경고, 훈계 해당)	기안		○		
	다. 자체 종결 처리(주의 촉구 등)	기안		○		
8.	감사 동향 보고	기안		○		
9.	비위공무원 통계 관리	기안	○			
10.	비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가. 특별감찰활동		기안		○	
	나. 복무기강감사	기안			○	
11.	신문 및 방송보도 조사 처리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12.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					
	가.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 계획	기안		○		
	나. 민원사무 처리 점검 결과 보고	기안		○		
13.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 결과 시정 조치	기안		○		
14.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					
	가. 위원 위·해촉		기안			○
	나. 재산등록 심사(비공개)	기안			○	
	다. 재산등록 신고서 접수	기안	○			
1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가. 면책심사 신청	기안		○		
	나. 면책심사 처리	기안		○		
16.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가. 감사자료 입력관리	○				
	나. 감사정보 공유	기안		○		
17.	상시모니터링 감사					
	가. 감사자료 상시모니터링 실시	○				
	나. 모니터링 결과 처분지시	기안		○		
18.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수행					
	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1) 중요 사항	기안			○	
	(2) 일반 사항	기안		○		
	나. 처분지시	기안		○		
19.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기안		○		
20.	일상감사 및 기술.취약분야 감사					
	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처분지시	기안		○		
21.	계약심사					
	가. 계획수립 및 결과 통보	기안		○		
22.	청렴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가. 반부패(청렴) 종합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청렴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다.청렴시책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기안		○		
	라.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부패방지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바.청렴도 측정 일반사항	기안		○		
	사.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	기안			○	
23.	인권에 관한 사무					
	가. 인권증진 기본(종합)계획 및 인권실태조사	기안				○
	나. 인권위원회 운영지원 및 일반업무	기안		○		
	다.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24.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사항					
	가. 주민감사청구 사항 보고 및 처리	기안		○		
	나. 주민감사청구 사항 처리결과 통보	기안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보건소공고 제2021-67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8.5.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7.21. ~ 2021.8.4.(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1999 -0199196	구월산	박*식	인주대로604번길 91 (구월동, 구월여중길 36) 1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1.10.	2021.8.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1.8.4.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1년 7월 21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2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7 (간석동) 외 3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9 (간석동)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7 (간석동)	2009.11.16.	행정구역명(간석동)을 이용하여 간석로로 제명	2021.7.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간석로 4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7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87, 1-88, 1-89, 1-261, 1-264, 1-2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4번길 1 (만수동)	2009.11.16.	만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7.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부로4번길 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을 건물번호로 부여	만부마을 사랑방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61-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래내로25번길 13 (구월동)	2009.11.16.	모래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7.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모래내로25번길 1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모래내전통 시장 공중화장실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54번길 54 (고잔동)	2009.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7.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654번길 5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4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9 (간석동)	2021.7.20.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26번길 14 (간석동)	2021.7.20.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26번길 14-1 (간석동)	2021.7.20.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2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소2-360호선, 소2-361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춘동 28-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개 노선					749						
신설	소로	2	360	8	국지 도로	566	소2-2	대로1-1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361	8	국지 도로	183	소로2-1	소로2-2	일반 도로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로 2-360	- 소로 신설 • 폭원(B):8m • 연장(L):566m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간 도로개설을 통해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 반시설 확보
-	소로 2-361	- 소로 신설 • 폭원(B):8m • 연장(L):183m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간 도로개설을 통해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 반시설 확보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24호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 고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7.21.)에서 의결,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남 동 구 청 장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97,794,416	100.00%	950,361,379	100.00%	47,433,037	4.99%
일반회계		970,207,745	97.24%	923,898,981	97.22%	46,308,764	5.01%
특별회계		27,586,671	2.76%	26,462,398	2.78%	1,124,273	4.25%
	기타특별회계	27,586,671	2.76%	26,462,398	2.78%	1,124,273	4.25%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11,165,084	1.12%	11,327,651	1.19%	△162,567	△1.4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200	0.00%	19,200	0.00%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96,679	0.17%	1,497,147	0.16%	199,532	13.3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13,400	0.03%	313,400	0.03%	0	0.00%
	주차장특별회계	14,392,308	1.44%	13,305,000	1.40%	1,087,308	8.17%

세 입 총 괄 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

(단위 : 천원)

장 · 관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970,207,745	100.00 %	923,898,981	100.00 %	46,308,764	5.01%
100	지방세수입	143,756,000	14.82 %	143,668,000	15.55 %	88,000	0.06%
	110 지방세	143,756,000	14.82 %	143,668,000	15.55 %	88,000	0.06%
200	세외수입	52,420,583	5.40 %	52,227,778	5.65 %	192,805	0.37%
	210 경상적세외수입	42,595,070	4.39 %	43,728,030	4.73 %	△1,132,960	△2.59%
	220 임시적세외수입	6,518,859	0.67 %	5,238,094	0.57 %	1,280,765	24.45%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306,654	0.34 %	3,261,654	0.35 %	45,000	1.38%
300	지방교부세	26,600,851	2.74 %	22,080,000	2.39 %	4,520,851	20.47%
	310 지방교부세	26,600,851	2.74 %	22,080,000	2.39 %	4,520,851	20.47%

400	조정교부금등	100,221,978	10.33 %	88,852,980	9.62 %	11,368,998	12.80%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00,221,978	10.33 %	88,852,980	9.62 %	11,368,998	12.80%
500	보조금	580,129,813	59.79 %	560,092,046	60.62 %	20,037,767	3.58%
510	국고보조금등	416,534,405	42.93 %	403,773,352	43.70 %	12,761,053	3.16%
520	시·도비보조금등	163,595,408	16.86 %	156,318,694	16.92 %	7,276,714	4.66%
600	지방채	11,200,000	1.15 %	7,700,000	0.83 %	3,500,000	45.45%
610	국내차입금	11,200,000	1.15 %	7,700,000	0.83 %	3,500,000	45.4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5,878,520	5.76 %	49,278,177	5.33 %	6,600,343	13.39%
710	보전수입등	55,874,983	5.76 %	49,278,177	5.33 %	6,596,806	13.39%
720	내부거래	3,537	0.00 %	0	0.00 %	3,537	순증

세 출 총 괄 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

【 기 능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70,207,745	100.00 %	923,898,981	100.00 %	46,308,764	5.01 %
010 일반공공행정	59,300,173	6.11 %	47,256,485	5.11 %	12,043,688	25.49 %
020 공공질서및안전	11,964,509	1.23 %	5,288,261	0.57 %	6,676,248	126.25 %
050 교육	12,892,764	1.33 %	12,741,214	1.38 %	151,550	1.19 %
060 문화및관광	15,029,740	1.55 %	13,985,256	1.51 %	1,044,484	7.47 %
070 환경	46,600,489	4.80 %	43,748,748	4.74 %	2,851,741	6.52 %
080 사회복지	610,110,678	62.88 %	598,009,747	64.73 %	12,100,931	2.02 %

090	보건	22,996,993	2.37 %	22,358,035	2.42 %	638,958	2.86 %
100	농림해양수산	3,524,622	0.36 %	3,463,714	0.37 %	60,908	1.76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577,320	0.68 %	6,518,320	0.71 %	59,000	0.91 %
120	교통및물류	14,055,262	1.45 %	11,447,138	1.24 %	2,608,124	22.78 %
140	국토및지역개발	53,833,817	5.55 %	44,928,315	4.86 %	8,905,502	19.82 %
160	예비비	1,841,382	0.19 %	2,669,295	0.29 %	△827,913	△31.02 %
900	기타	111,479,996	11.49 %	111,484,453	12.07 %	△4,457	△0.00 %

세 출 총 괄 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전체

【 성 질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총 계	970,207,745	100.00%	923,898,981	100.00 %	46,308,764	5.01%
100 인건비	95,236,850	9.82%	94,814,079	10.26 %	422,771	0.45%
200 물건비	38,121,279	3.93%	36,433,541	3.94 %	1,687,738	4.63%
300 경상이전	714,267,171	73.62%	706,360,985	76.45 %	7,906,186	1.12%
400 자본지출	107,944,292	11.13%	78,307,346	8.48 %	29,636,946	37.85%
700 내부거래	1,755,554	0.18%	1,299,554	0.14 %	456,000	35.09%
800 예비비및기타	12,882,599	1.33%	6,683,476	0.72 %	6,199,123	92.75%

세입총괄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전체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7,586,671	100.00 %	26,462,398	100.00 %	1,124,273	4.25%
200 세외수입		7,030,722	25.49 %	6,984,423	26.39 %	46,299	0.66%
	210 경상적세외수입	3,142,185	11.39 %	3,099,423	11.71 %	42,762	1.38%
	220 임시적세외수입	1,068,537	3.87 %	1,065,000	4.02 %	3,537	0.33%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820,000	10.22 %	2,820,000	10.66 %	0	0.00%
500 보조금		2,347,778	8.51 %	1,997,778	7.55 %	350,000	17.52%
	510 국고보조금등	1,648,262	5.97 %	1,648,262	6.23 %	0	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699,516	2.54 %	349,516	1.32 %	350,000	100.14%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208,171	66.00 %	17,480,197	66.06 %	727,974	4.16%

	710	보전수입등	18,168,902	65.86 %	17,235,599	65.13 %	933,303	5.41%
	720	내부거래	39,269	0.14 %	244,598	0.92 %	△205,329	△83.95%

세출총괄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전체

【 기 능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7,586,671	100.00 %	26,462,398	100.00 %	1,124,273	4.25 %

010	일반공공행정	252,832	0.92 %	53,300	0.20 %	199,532	374.36 %
070	환경	11,165,084	40.47 %	11,327,651	42.81 %	△162,567	△1.44 %
080	사회복지	1,202,169	4.36 %	1,202,169	4.54 %	0	0.00 %
120	교통및물류	12,893,904	46.74 %	11,806,596	44.62 %	1,087,308	9.21 %
140	국토및지역개발	332,600	1.21 %	332,600	1.26 %	0	0.00 %
900	기타	1,740,082	6.31 %	1,740,082	6.58 %	0	0.00 %

세출총괄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전체

【 성 질 별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7,586,671	100.00%	26,462,398	100.00 %	1,124,273	4.25%
100 인건비	1,883,873	6.83%	1,883,873	7.12 %	0	0.00%
200 물건비	1,004,185	3.64%	1,004,185	3.79 %	0	0.00%
300 경상이전	3,933,077	14.26%	3,756,388	14.20 %	176,689	4.70%

제1625호

남동구 구보

2021. 7. 22. 목요일

400	자본지출	6,139,502	22.26%	5,063,751	19.14 %	1,075,751	21.24%
700	내부거래	11,059,141	40.09%	11,220,752	42.40 %	△161,611	△1.44%
800	예비비및기타	3,566,893	12.93%	3,533,449	13.35 %	33,444	0.95%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2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소2-362호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499-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62	8	국지 도로	258	소3-1	소2-1	일반 도로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소2-362	- 신설 - 위치 : 수산동499-1번지 일원 - 폭원 : 8m - 연장 : 258m - 면적 : 2,107㎡	차량 교차의 어려움 등 교통민원이 빈번한 협소한 현황도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단절된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함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26호

도시관리계획(간석자유시장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간석자유시장주변 지구단위계획)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도시관리 계획(간석자유시장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62번지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간석자유시장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	-	간석자유시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남동구 간석동 224-462번지 일원	12,216	주거환경관리 사업 완료 남동구고시 제2020-112호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준주거지역	12,216	-	12,216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58	6	국지 도로	90	소1-3	소1-229	일반 도로	소1-3, 소1-229	2016.06.20. 남동구고시 제2016-134호	

(2)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간석동 37-116번지 일원	-	증) 2,306	2,306		

※ 주) 주차장 시설의 용적률은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따름.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 위치 : 간석동 37-116번지 일원 ○ 면적 : 2,306㎡ ○ 노외주차장 신설	○ 지역내 부족한 주차공간 및 간석자유시장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나)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1)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사회복지 시설	간석3동 224-462	520	-	520	2016.06.20. 남동구고시 제2016-134호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	건축물 용도	허 용 용 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불 허 용 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준주거지역의 호용하지 않는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500% 이하)
		높 이	○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제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적용)
		형 태 및 외 관	○ 경사도 3/10 ~ 6/10 이내의 경사지붕 권장 ○ 평지붕 조성시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옥상녹화 및 옥상 정원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며, 옥상녹화 조성시 면적의 1/2을 조경면적으로 인정 ○ 가로에 면한 건축물 외벽에는 가급적 부착물을 설치하지 않고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 후면이나 지붕 상부에 설치
		색 채	○ 원색적 재료 및 과도한 반사성 재료 사용 지양, 벽면녹화 권장 ○ 건물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2010」을 준수하도록 권장
		담 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 부득이 담장 설치시 최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하며,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투시율 80%) 등 친환경 담장으로 설치하도록 권장 ○ 담장 도색시에는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YR 계열 및 Y계열을 사용하고 명도4 채도4 이하로 하도록 권장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구역 전체	옥외 광고물	○ 모든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는 정원 및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 ○ 대지내 주차면 설치 가능시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의 조성은 건축주가 시행하며 조성시 당해 면적은 조경면적에 산입
		환경친화 요소	○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기준 준수 ○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기준 준수

2)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변경 없음)

구 분	계획내용																
주민공동체 활성화계획	○ 마을공동체의 구성 및 역할 - 마을의 유지·관리, 주민 협약의 이행 등을 위해 질서유지 및 공동체회복을 도모하는 주민 조직 - 간석자유시장 ‘상인회’와의 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마을밥집’ 등 경로당 식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마을행사 추진																
주민 공동이용시설 활용방안 및 활성화 프로그램	○ 기존 경로당을 철거 후 신축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 <table><tr><th colspan="3">구분</th><th>주요내용</th><th>운영주체</th></tr><tr><td rowspan="3">활용 및 운영 방안</td><td>1층</td><td>경로당</td><td>○ 경로당 및 주민회의 등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관리소로 활용</td><td rowspan="3">마을주민</td></tr><tr><td>2층</td><td>커뮤니티센터</td><td>○ 마을배움터, 밥집 등 주민소통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학습공간</td></tr><tr><td>옥상</td><td>텃밭조성</td><td>○ 마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td></tr></table>	구분			주요내용	운영주체	활용 및 운영 방안	1층	경로당	○ 경로당 및 주민회의 등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관리소로 활용	마을주민	2층	커뮤니티센터	○ 마을배움터, 밥집 등 주민소통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옥상	텃밭조성	○ 마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
구분			주요내용	운영주체													
활용 및 운영 방안	1층	경로당	○ 경로당 및 주민회의 등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관리소로 활용	마을주민													
	2층	커뮤니티센터	○ 마을배움터, 밥집 등 주민소통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옥상	텃밭조성	○ 마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														
행정지원	○ 향후 진행의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활동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상담 및 지원																

IV.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